

NFT 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일중* · 차승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NFT가 현행 「소득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됨으로써, NFT 거래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NFT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자산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NFT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경우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NFT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NFT가 갖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차별적인 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NFT의 발행목적과 거래형태에 맞게 소유형 NFT, 증권형 NFT, 기타의 NFT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되게 과세함으로써 NFT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형 NFT는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이므로 단일토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하도록 하며, NFT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한다. 둘째, 증권형 NFT는 기초자산의 투자 상품화 또는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현재 신설되어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 소득을 열거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의 NFT는 위 소유형 NFT와 증권형 NFT에 해당하지 않는 NFT로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의 가상자산으로 과세한다.

〈주제어〉 NFT, 소득세, 기타소득, 미술저작품

*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세무법인 유명 대표세무사, 01033571234@daum.net, 주저자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회계세무학전공) 교수, smcha@kyonggi.ac.kr, 교신저자

I. 서 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는 전자토큰에 일종으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소유권 및 거래 이력의 증명이 가능하게 하는 토큰이 발행·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라하며 일종의 파생된 암호화폐라 할 수 있다. 즉,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복제 및 위·변조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정 기초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주로 그동안 복제 및 위·변조가 용이했던 디지털그림, 영상 등 디지털저작물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 실재하는 실물자산(미술품, 희소한 소장품 등)에 대하여도 토큰화(Minting, ‘민팅’)¹⁾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NFT의 속성 때문에 디지털 아티스트와 디지털 수집품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아트 및 수집품 등과 가상공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중심으로 흘러가던 시장에 MZ세대가 등장하며 투자 평균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금액의 대작뿐 아니라 신진작가들이 그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의 작품들의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아트테크에 신기술에 익숙한 MZ세대가 손을 잡아 주면서 예술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²⁾

현재 NFT는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그림, 영상, 음원 등 디지털저작물, 게임아이템 및 데이터관리 외에도 문화재·예술품·소장품에서 그 활용도가 상당하다. 실제로 2021년 3월 11일 글로벌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는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디지털 아트 작품(JPG)을 NFT로 발행하여 경매를 통해 6934만 달러(한화 약 784억원)에 낙찰을 받아 내었다. 해당 경매로 크리스티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작품을 처음으로 거래한 글로벌 경매사가 되었고, 무명작가였던 비플의 작품은 미술사에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³⁾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미술계는 서화 등 실물 작품들도 NFT로 발행하여 NFT 거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송미술관은 국보 ‘훈민정음해례본’을 바탕으

1) 동전과 같은 범정화폐를 주조할 때 주조의 뜻을 가진 단어로 마인팅(miniting)으로도 불린다. 대체불가능토큰(NFT)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말한다.

2) ‘AI·메타버스·블록체인 만난 아트, MZ세대 등에 업고 예술시장 트렌드로’, 매일경제 2022.8.31. 기사 인용

3) ‘10만원에 시작해 784억에 낙찰됐다. JPG 그림파일’, 조선일보 2021.3.13. 기사 인용

로 NFT 100개를 만들어 개당 1억원에 판매한 바 있고, 이후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국보 ‘금동 삼존불감’을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 모임 헤리티지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 25억원에 판매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이 NFT는 201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2021년도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전세계 NFT 시장규모는 410억달러(한화 약 49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차익거래에 대하여 여타의 투자자산 차익거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023년부터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투자차익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법안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안의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간 오랜 협의 끝에 과세시기를 2년 늦추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2말에 여야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2025년 시행예정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NFT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심지어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NFT의 발행 및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봄으로써 NFT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등의 NFT 관련소득이 NFT와 유사한 다른 자산 등의 소득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과세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련 법규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과세목적을 위해 NFT의 발행목적, 법적 및 기능적 성격 등을 살펴본 결과 NFT를 한가지로의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해당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되어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NFT는 단일 자산이 아니라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특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실질과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NFT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NFT가 갖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다.⁴⁾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NFT를 발행목적과 거래형태에 따라 소유형NFT, 증권형NFT, 기타의NFT로 분류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형NFT는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이므로 단일토큰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한다. 둘째, 증권형 NFT는 기초자산을 투자상품화를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단지 사업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투자계약

4) 한국금융연구원 ‘대체불과토큰(NFT)의 특성과 규제방안(2021.12.)’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개별 NFT의 발행형태에 따라 1. 게임아이템, 2. NFT아트, 3. 증권형 NFT, 4. 결제수단형 NFT, 5. 실물형 NFT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증권에 해당되므로 분할토큰거래신고를 의무화 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의 NFT는 위 소유형 NFT와 증권형 NFT에 해당되지 않는 NFT로 가상자산과 같이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와 같이 NFT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다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자산 및 거래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 과세방안의 제시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치권과 입법관련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NFT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NFT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NF의 법적 성격과 현행 NFT 과세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Ⅴ장에서 NFT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요약을 제시하였다.

Ⅱ.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개념⁵⁾

1. 관련용어 정의

NFT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많이 접하게 되는 NFT 관련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화폐(digital money ; digital currency)

디지털화폐는 전자지급수단의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은행권·동전과 같이 물질인 방식 아니라 디지털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유형의 화폐라 할 수 있는데,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정보로 바꾸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고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에 보관하여 사용하거나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도 교환 및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디지털화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2012년에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보장

5) NFT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는 위키백과를 참조하였다.

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14년에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fiat currency)에 속하지도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 수령되고 전자적으로 양도·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하였다. 한편 2013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규제망(FinCEN)은 화폐(currency)를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지정되어 발행국가의 교환수단으로 유통되고 통상 사용·수령되는 동전과 지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진정한 화폐에 대비하여 가상화폐란 '어떤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화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은행감독청(EBA),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각 암호화폐의 분산형 통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운용하는데,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 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외관상의 유사한 모습으로만 파악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로 볼 때 현재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라. 가상자산(Virtual Asset)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금법」 제2조 제3항에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 외에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을 넘어 너무 광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항공마일리지, 금융권 포인트 등 디지털로 적립 및 사용될 수 있는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2. NFT의 개념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여기에 기초자산의 소유자 정보 및 거래이력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고유성과 희소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NFT로 소유한 꼬리표가 붙은 디지털자산들은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며 기술의 특성상 누군가가 이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위조할 수 없다.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NFT로 중복해서 만들더라도, 결국엔 기존의 NFT와는 다른 NFT를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NFT로 생성된 진품과 구별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미술품 등)도 NFT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을 NFT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 표현하는데, 토큰(token)이 ‘대안화폐’를 의미하는 것에 착안해 역시 ‘화폐를 주조한다’라는 뜻을 지닌 영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NFT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NFT의 특징은 희소성과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파일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했으며, DRM을 이용한 복제 방지 기술 또한 결국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저작물 및 각종 예술품들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산들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II. 선행연구

1. NFT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윤종수와 표시영(2021)은 NFT를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증명서로서의 NFT, 가상경제 재화로서의 NFT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NFT를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 연구에서는 NFT와 같은 암호자산은 물건의 속성인 경합성, 배제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서 민법상의 물건, 즉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물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며, NFT를 물건으로 볼 경우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왔던 저작권법의 미술저작물 전시권의 제한, 권리 소진의 원칙, 추급권이 NFT에 적용될 수 있거나 NFT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경(2021)은 NFT 콘텐츠 거래의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판매된 NFT에 대해 판매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구매자가 NFT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처분 권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NFT에 적용되는 법적 환경은 소유권에 기한 처분권능의 이전이 아닌 여전히 지적재산 라이선스로 간주됨에 따라 시장과 규범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규범의 괴리로 인해 시장의 일반 최종 구매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FT 거래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하고 콘텐츠 최종 구매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NFT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 재산의 거래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소비자에게 거래의 중요한 맥락과 실체를 명확히 고지하고, NFT에 연결된 콘텐츠의 검증과 진본성 확인을 보증하는 등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심의 거래관행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던 NFT 이용자 혹은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진명(2022)은 NFT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특히 민사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는 동 연구에서 NFT는 디지털 원본의 부채에 따라 저작권법적 사용수익과 민법상의 물권적 사용수익의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법리에 수정이 필요하고, 민사법은 이러한 범위에서 거래에 관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상태이고, 현행 민사법의 법리를 NFT에 적용할 수 있는지, NFT에 민사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NFT 과세에 관한 연구

현재 가상자산의 과세는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NFT 거래에 따른 과세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용(2020)은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하면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유석(2021)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체계는 가상자산소득 유형 구분의 모호성, 가상자산소득의 금융투자소득 범위 배제 근거의 미흡성, 가상자산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과세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동 연구에서 그는 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허용 등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과세정책상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언급하였다.

IV. NFT의 법적성격 및 기능

NFT는 초기에 디지털그림 및 영상 등 디지털아트와 디지털 수집품의 거래 등을 온라인 및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해당 소유권 및 거래이력에 대한 신뢰성의 보증을 위해 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인 미술품 및 예술작품, 골동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또는 디지털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해당 기초자산을 손쉽게 지분을 나누어 수명 또는 수백 아니 수천명이 분할하여 투자(조각투자)할 수 있도록 NFT가 발행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발행목적 때문에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물자산의 소유권 장부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실물자산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NFT의 과세에 대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NFT의 법적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가상자산으로서의 NFT(화폐 및 교환 기능)

과세예정인 현행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보면,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금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법이 열거한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법이 열거한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상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소득세법상으로도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투자계약증권으로서의 NFT(단순 투자수단으로서의 NFT)

금융위원회가 2022년 9월 6일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을 주제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동 세미나의 발표를 보면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증권형 토큰 공개’, ‘규제’, ‘거래시설 신뢰성’, ‘투자자 교육’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다.⁶⁾

증권형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I·P) 등의 실물자산 또는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6)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뜻한다. 즉, 투자계약증권과 같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한다. 증권형 토큰도 대부분의 토큰과 같이 소수점 18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증권을 대체하게 된다면 거래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증권을 매매(양도)하기도 수월해지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원저작물 등 기초자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minting)되는 NFT는 투자수단으로서 공동 지분소유가 가능하며, 그 거래단위가 제한 없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으므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령」에서 정의하는 증권형 토큰 즉,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초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장부로서의 NFT(기능적 측면)

가상자산은 가상의 디지털자산을 말하는데, NFT는 실물자산에 대하여도 소유권 증명과 거래이력 증명 등 거래장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고 공동투자 수단이 아닌 기초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이력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쓰인다면, NFT의 거래는 해당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를 위해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NFT가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NFT 거래는 가상자산 그 자체를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거래비용 절감과 매매 용이성이 강조되는 증권형 토큰(투자계약증권)으로서 볼 여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의 거래로 예를 들어보면, 해당 부동산의 거래는 물건 자체를 움직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자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우리는 동 거래가 부동산 자체가 거래된 것인지 등기부등본이 거래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자산의 거래목적이 소유권 및 재산권의 온전한 이전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NFT를 이용했다면 이 때의 거래는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가 되는 것이지 NFT가 거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의 NFT는 단순히 신뢰성있는 디지털거래장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NFT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FT 자체에 자산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V. NFT의 합리적인 과세방안

1. 문제제기

현재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NFT는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유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법인 「특금법」 규정상 가상자산에 해당 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다음의 소득세법 제64조의3과 같이 20%세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⁷⁾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NFT를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초자산의 유형 및 성격 그리고 발행목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

7) 가상자산에 대한 동 규정들은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말 시행 연기가 결정되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하면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FT의 발행목적이나 거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NFT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중요한 과세원칙인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과세가 될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납세자들과 과세당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일률적인 가상투자 과세방식은 투자계약증권과 같이 공동투자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나 기초자산을 NFT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과 불합리성이 발생함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2. NFT 거래 소득의 과세방안

가. NFT 유형별 분류

NFT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네 가지 NFT 발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초자산이 완전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그림, 디지털수집품 등이어서 그 원본성을 증명하거나, 소유권 및 거래이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경우
- ② 기초자산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온라인 또는 가상공간에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경우
- ③ 디지털자산 및 실물자산 등의 기초자산을 공동투자 목적으로 투자상품화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경우
- ④ 주식과 같이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을 목적(initial coin offering, ICO⁸⁾)으로 발행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NFT는 발행될 수 있다. 이처럼 발행된 NFT는 소유권의 이전 및 투자지분 이전 등으로 거래될 수 있지만 온라인 또는 가상공간에서 단순히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NFT의 법적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발행목적 및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과세방식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NFT 과세를 위해 NFT 발행을 소유형 NFT, 증권형 NFT, 기타의 NFT 세 가지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8)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또는 암호화폐 공개라고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말한다.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으로부터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서와 영상을 공개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에서 나온 말이다.

나. 발행목적 신고 의무화

NFT를 최초로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는 그 발행목적은 단일토큰과 분할토큰 중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단일토큰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의 유형을 함께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일토큰으로 거래하다가 분할토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단일토큰 거래신고는 소유형 NFT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토큰 거래신고는 증권형 NFT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단일토큰 거래신고(소유형 NFT)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으로 NFT를 발행하고, 발행 이후 거래도 NFT를 분할하지 않고, 토큰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에 단일토큰 거래신고를 한다. 이때 기초자산이 디지털기반의 자산인 경우와 실물자산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초자산 유형을 신고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게임아이템인 경우에 ‘디지털자산-디지털수집품’으로 하여 신고하고, 기초자산이 실물 골동품이라면 ‘실물자산-골동품’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

(2) 분할토큰 거래신고(증권형NFT)

기초자산을 공동투자목적으로 투자상품화하기 위하여 분할거래가 예고되는 NFT를 발행하거나 내재가치가 있는 기초자산 없이 지분권을 증명하는 자금조달목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분할토큰 거래신고를 한다. 기초자산의 투자상품화를 위해 발행하는 NFT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이 디지털기반의 자산인지 실물자산인지 그리고 유형이 어떠한지를 구분하여 신고한다.

(3) 단일토큰거래신고와 분할토큰거래신고의 변경신고

단일토큰으로 신고된 NFT를 분할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NFT소유자는 분할토큰으로 변경신고 후 거래한다. 또한, 분할토큰으로 신고된 NFT를 단일토큰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NFT를 모두 매수한 소유자가 단일토큰으로 변경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없이 지분권을 증명하는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된 NFT는 내재가치가 존재하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단일토큰으로 신고할 수 없다.

3. NFT의 유형별 과세

NFT는 발행목적과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각각 차별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행목적이 신고된 NFT는 다음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 단일토큰(소유형 NFT)의 과세

단일토큰의 경우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을 위해 발행된 경우로 기초자산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권리의 획득 이전에 해당하므로 NFT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소득)은 NFT가 기반한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골동품(실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기초자산이 디지털수집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단일토큰으로 자진신고된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삽입하거나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단일토큰은 가상자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분할토큰(증권형NFT)의 과세

분할토큰의 경우 기초자산이 투자상품화 되어 NFT가 발행된 경우나 기초자산 없이 사업의 자금조달목적으로 NFT를 발행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권형토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⁹⁾ 따라서 분할토큰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이 투자상품화 되어 NFT가 발행된 경우나 기초자산 없이 사업의 자금조달목적으로 NFT를 발행되는 경우 증권형 토큰 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거주의 과세방식 입장에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분할토큰으로 자진신고된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삽입하거나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분할토큰은 가상자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말에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5년 간 적용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 : 5천만원,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세 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다. 기타의 NFT 과세

위와 같이 단일토큰 또는 분할토큰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NFT가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면 2025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 범위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이다. 그 규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1〉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요약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취득가액 평가	선입선출법
의제취득가액	법 시행전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의제취득가액 적용 MAX(2024.12.31.현재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의무 없음)
공제금액	250만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신고 및 납부	연 1회 신고 납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V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NFT가 현행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NFT의 법적성질, 발행목적, 그리고 NFT의 실질적인 기능 등을 분석하여 2025년 과세예정인 「소득세법」상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NFT는 단일 자산이 아니라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특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NFT의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NFT가 갖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과세가 예정된 세법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NFT가 갖는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과세형평성에

1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6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NFT의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NFT를 발행목적과 거래형태에 따라 소유형 NFT, 증권형 NFT, 기타의 NFT로 분류하고, NFT 최초 발행자로 하여금 그 발행 목적을 단일토큰(소유형 NFT), 분할토큰(증권형 NFT) 등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고된 각각의 NFT는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첫째, 소유형 NFT는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이므로 단일토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NFT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한다. 둘째, 증권형 NFT는 기초자산을 투자상품화의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이러한 경우 NFT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므로 현재 신설되어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 소득을 열거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의 NFT는 위 소유형 NFT와 증권형 NFT에 해당되지 않는 NFT로 가상자산과 같이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와 같이 NFT를 발행목적 및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여 과세하여야만 NFT 거래로 인한 소득이 다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자산 및 거래와 과세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이 하루빨리 정비되어 납세자 및 과세당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규정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현경. 2021.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 391－432.
- 윤종수·표시영. 2021.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협회 제70권 제6호 : 211－244.
- 임재범. 2022.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249호.
- 장기용. 2022.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제64권 : 71－97.
- 정유석. 2021.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9권 : 21－44.
- 정진명. 2022.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민사법학 제98권 : 3－36.
- 조동관. 2022.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2－4호 (통권 제185호).
- 한국금융연구원. 2021. “대체블과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es for the NFT Transactions

Park, Il-Jung* · Cha, Seung-Min**

〈Abstract〉

In this study, taxation problems that arise when NFTs are classified as virtu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are taxed as other assets under the 「Income Tax Act」 are raised and solutions are presented. wanted to present.

Since NFT has various function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it is difficult to define it as a single asset and tax it because it cannot be specified as a single asset. Therefore, if NFTs are included in virtual asset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and taxed, they may not reflect economic realities at all, causing problems in taxation equity in transactions with similar realities. In other words, NFTs are classified by typ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and it is judged that discriminatory tax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tch the economic substance of NFTs.

In this study, NFTs are classified into ownership-type NFTs, securities-type NFTs, and other NF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and a reasonable taxation plan suitable for the economic substance of NFTs is presented by discriminating taxation on each as follows. First, since owned NFTs are a means of proving the originality, ownership, and transaction history of the underlying assets, it is mandatory to report single token transactions and trade them. Second, since securities-type NFTs ar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ssued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underlying assets or raising business funds, the relevant income is listed in the 「Income Tax Act」 so that it can be taxed as the newly established and schedul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need to be specified. Third, other NFTs are NFTs that do not fall under the above owned NFTs and securities NFTs, and are taxed as virtual assets of other incom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Key words〉 NFT, Individual Income Tax, Acquisition Tax, Virtual Assets

* Ph.D. Candidate, CEO/CTA in YUMYUNG TAX COMPANY, 01033571234@daum.net, First Author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smcha@kyonggi.ac.kr, Corresponding Author